

의안번호	제 77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근거 법령인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폐지되고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에 따라 법령 및 조항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변경(안 제3조)
  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→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#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”를 “「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「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</p>	<p>제3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----- ----- 「<u>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3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제30조(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)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
2.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

### □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3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
2. 「지방세법」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